

<p>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시 추가 편입되어, 추가편입 이전부터 적법하게 건축('76.5.13)된 건축물(509-19호)과,</p> <p>○ 추가 편입 이후 건축되었으나, 건물의 일부가 공원에 저축되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509-20호(공원경계선이 동일 필지를 관통할 뿐만 아니라 509-19호와 공원경계선 사이에 위치)에 대하여 공원 해제.</p> <p>4. 추진 경위</p> <p>○ '96.3.13~'97.11.30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 수립(서울시)</p> <p>○ '97.12.23 :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정비계획(안) 통보(서울시→해당구)</p> <p>○ '98.2.28 : 도시계획(안) 공람공고(주민 의견 없음)</p> <p>5. 참고 사항</p> <p>○ 공원과 검토 의견 : 이견 없음.</p> <p>○ 도시계획사항 : 자연녹지지역, 공원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15%; text-align: center;">26</td> <td style="width:30%;">제출년월일: 1998.7.11.</td> <td style="width:40%;">제출자: 서울특별시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 건 명 : 삼성역 주변 용도지역 변경결정</p> <p>2. 입안내용 : 용도지역 상향조정</p>	의안 번호	26	제출년월일: 1998.7.11.	제출자: 서울특별시								
의안 번호	26	제출년월일: 1998.7.11.	제출자: 서울특별시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rowspan="2">위 치</th> <th colspan="2">용도지역 변경</th> <th rowspan="2">면적(m²)</th> <th rowspan="2">비 고</th> </tr> <tr> <th>당 초</th> <th>변 경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강남구 삼성동 168-12, 대치동 955-3 일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주거지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일반상업지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,29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삼성역 주변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위 치	용도지역 변경		면적(m ²)	비 고	당 초	변 경	강남구 삼성동 168-12, 대치동 955-3 일대	일반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1,290	삼성역 주변
위 치	용도지역 변경		면적(m ²)	비 고									
	당 초	변 경											
강남구 삼성동 168-12, 대치동 955-3 일대	일반주거지역	일반상업지역	1,290	삼성역 주변									
<p>3. 입안사유</p> <p>○ 삼성역 사거리의 건고시 제198호('71.4.7), 건고시 제345호('74.9.24), 건고시 제381호('74.11.25)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으로 결정되었으나 건고시 제137호('77.7.9)로 도시계획시설(광장)이 결정됨에 따라 상업지역이 단절되었으며,</p> <p>○ 상업지역이 단절된 부분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삼성무역센터 등 주변지역과 균형있는 개발을 이취 도시기능 및 경관상 건전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변경코자 함.</p>	<p>4. 참고사항</p> <p>○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</p> <p>○ 주민 의견청취 결과 : 의견없음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15%; text-align: center;">27</td> <td style="width:30%;">제출년월일: 1998.7.</td> <td style="width:40%;">제출자: 서울특별시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 건 명 : 성동구 하왕십리동, 도선동 등(왕십리 부도심권)</p> <p>2. 입안내용 : 상세계획구역 결정</p>	의안 번호	27	제출년월일: 1998.7.	제출자: 서울특별시								
의안 번호	27	제출년월일: 1998.7.	제출자: 서울특별시										
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구역명</th> <th>위 치</th> <th>면적(m²)</th> <th>비 고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결 정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왕십리 부도심권 상세계획구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성동구 하왕십리동, 도선동, 홍익동, 마장동, 행당동 일대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406,000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왕십리 부도심권 상세계획구역 면적 774,000m² 중 406,000m²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구 분	구역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	결 정	왕십리 부도심권 상세계획구역	성동구 하왕십리동, 도선동, 홍익동, 마장동, 행당동 일대	406,000	왕십리 부도심권 상세계획구역 면적 774,000m ² 중 406,000m ²		
구 분	구역명	위 치	면적(m ²)	비 고									
결 정	왕십리 부도심권 상세계획구역	성동구 하왕십리동, 도선동, 홍익동, 마장동, 행당동 일대	406,000	왕십리 부도심권 상세계획구역 면적 774,000m ² 중 406,000m ²									
<p>3. 입안사유</p> <p>○ 2011년 서울 도시기본계획의 구체화로 왕십리 부도심 정비계획이 확정('98.3.13)됨에 따라 토지이용의 합리화와 도시의 기능, 미관 및 환경을 효율적으로 유지·관리하기 위하여 상세계획구역 결정으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수립코자 함.</p> <p>4. 추진경위</p> <p>○ '98.4.22~5.6 : 도시계획(안) 공람·공고(성동구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- 주민의견 : 없음</p>	<p>5. 참고사항</p> <p>○ 현재의 도시계획사항 : 일반주거지역, 상업지역, 제2, 4종 미관지구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u>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15%;">의안 번호</td> <td style="width:15%; text-align: center;">29</td> <td style="width:30%;">제출년월일: 1998.7.11.</td> <td style="width:40%;">제출자: 서울특별시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 건 명 : 광진구 광장동 381 일대 도시계획시설(공원) 변경결정</p> <p>2. 입안내용</p>	의안 번호	29	제출년월일: 1998.7.11.	제출자: 서울특별시								
의안 번호	29	제출년월일: 1998.7.11.	제출자: 서울특별시										

구 분	시설명	시설의 배분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						
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					
변경	공원	도시자연공	광장동 381 일대	5,073,566	증)33,222	5,106,788	용마자연공원편입						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광장동 381번지 일대는 아차산기슭의 용마 자연공원과 접하며 한강주변 동남부 서울시민이 항상 바라보는 풍치가 수려하고 입상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○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의 공원녹지 체계상 환상녹지축의 일부인 수락산-불암산-용마산-아차산으로 이어지는 동부녹지축에 해당되어 ○ 이 지역의 자연경관과 상대계를 보존하고 체계적인 공원으로 가꾸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도록 하고 ○ 이 일대 녹지보존을 열망하는 시민여론에 부응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함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77.7.9 용마·아차산 일대 공원결정(건고시 제138호) ○ '86.8.1 광장동 산 79-1 일대 수도용지 결정(서고시 제548호) ○ '97.2.13 동 지역일대 자연녹지지역 변경결정(서고시 제1997-40호) <p>5. 참고사항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48</td> <td>제출년월일: 1998.7.30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>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 건 명 :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번지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</p> <p>2. 입안내용 : 공원결정</p>				의안 번호	48	제출년월일: 1998.7.30.	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
의안 번호	48	제출년월일: 1998.7.30.											
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	
구 분	시설명	시설의 세분	위 치	면적(m ²)			비 고						
				당 초	변 경	증·감							
변경	공원	근린공원	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	-	6,456	증)6,456	영등포시립병원 이적지						
<p>3. 입안사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22번지는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영등포시립병원 이적지로서 주변 공구상가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공원을 조성한 지역으로, 공원의 효율적 유지·관리를 위하여 공원으로 결정코자 함. <p>4. 추진경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'97.11.25 : 공원조성완료 ○ '98.6.4 : 도시계획(안) 공람공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의견없음 <p>5. 참고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도시계획사항 : 준주거지역, 일부 도시계획 <p>가. 상세계획구역 변경 결정조서</p>			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시설(철도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 : 지하철5호선 환기구(A=444m²) <p>○ 토지현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필지 6,456m²(시유지)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도시계획결정에 관한 의견청취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auto; margin-right: auto;"> <tr> <td>의안 번호</td> <td>50</td> <td>제출년월일: 1998.7.31.</td> </tr> <tr> <td colspan="2"></td> <td>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</td> </tr> </table> <p>1. 안 건 명 : 중화생활권중심 상세계획 결정</p> <p>2. 입안내용</p>				의안 번호	50	제출년월일: 1998.7.31.	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
의안 번호	50	제출년월일: 1998.7.31.											
		제 출 자: 서울특별시장											
위 치		면적(m ²)			비 고								
		기 정	변 경	변경후									
중랑구 중화동 286, 303, 305번지 일대		34,000	감) 4,000	30,000	도면 정정없이 단순 면적변경								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